

제8조(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가.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 다.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제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40%, 60% 경감한다.
- 라. 월 이용료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 (단, 노인장기요양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 마. 그 밖의 이용부담액 및 식대, 간식비 등 비급여 항목의 금액을 추가로 실비 청구할 수 있고, 금액은 별지에 따른다.

1. 노인장기요양기관(재가기관) 기본수가(월 한도액)

등 급	월 한도액	본인일부부담금			
		일반대상자 (15%)	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 감경대상자 (9%)	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 감경대상자 (6%)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수급권자
장기요양 1등급	1,885,000	282,750	169,650	113,100	면 제
장기요양 2등급	1,690,000	253,500	152,100	101,400	
장기요양 3등급	1,417,200	212,580	127,550	85,030	
장기요양 4등급	1,306,200	195,930	117,560	78,370	
장기요양 5등급	1,121,100	168,170	100,900	67,270	
인지지원 등급	624,600	93,690	56,210	37,480	

(2023.01.01.~ , 단위:원)

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 1)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2) 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제공을 개시한 시각에 따라 가산할 수 있다.
- 단, 야간·심야·휴일 가산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가산하지 아니한다.
- 3) 방문요양 급여비용(방문시간당)

급여제공시간	금액(원)	급여제공시간	금액(원)
30분 이상	16,190	150분 이상	46,970
60분 이상	23,480	180분 이상	52,880
90분 이상	31,650	210분 이상	58,930
120분 이상	40,280	240분 이상	65,000

(2023.01.01.~ , 단위:원)

3.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 1) 방문목욕 서비스 급여비용 산정은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한다.
- 2) 방문목욕 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3) 방문목욕 급여비용(방문당)

분 류		금 액 (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차량 내 목욕	82,160
	가정 내 목욕	74,070
방문 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6,250

4. 주야간보호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3시간이상 ~ 6시간 미만	38,630	35,760	33,010	31,510	30,000	30,000
6시간이상 ~ 8시간 미만	51,780	47,960	44,270	42,770	41,240	41,240
8시간이상 ~ 10시간 미만	64,400	59,660	55,080	53,580	52,050	52,050
10시간이상 ~ 13시간 이하	70,950	65,720	60,720	59,190	57,690	52,050
13시간 초과	76,080	70,480	65,110	63,600	62,100	52,050

바. 신원인수원의 권리, 의무, 계약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 1)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2)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 3)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 1)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 3) 건강상태의 이상 시 즉시 통보 의무
- 4) 장기출장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성정 의무
-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변경시 안내할 의무
- 6) 노인 학대 징후 발견 시 조사 및 상담의 의무

3.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 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 1)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2)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또는 보균자로 선정될 때
- 3)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제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 5) 수급자의 건강과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사.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한다.

아. 이용료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